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정진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46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외 9명 공동발의)
-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2018년 12월 11일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 등에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안 제8조)
- 나.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 다.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0조)
- 라.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1조)
- 마.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12조)
- 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의 최근 개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목적조항의 수정과 관련

- 개정안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조항을 수정하였음. 현행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2조2항¹⁾에 근거한 위임조례인바, 각주와 같이 해당 조항은 헌혈 권장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목적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법 제4조의4²⁾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법에 따라 시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1)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생략>

2)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있으며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하는 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혈액관리법 시행령</u>」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혈액관리법</u>」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회를 구성하고, ----- ----- ----- -----.</p>

- 현행 조례의 발의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헌혈 증진 및 헌혈장려인 점에서 볼 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조항에서 강조되는 경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로 보일 수 있어 협의회 구성 외 헌혈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조문의 인용에서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으나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중앙정부에 협조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인용에서 간명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임.
 -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협의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혈액수급계획 및 권장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권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2조제2항이 협의회 구성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나 명확하게 협의회 구성 근거로

규정하기 어려움.

나. 협의회 구성과 관련

- 개정안의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제8조), 기능(제9조), 위원의 임기(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위원의 해촉(제12조), 협의회 운영(제13조)로 제안되었음.
-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17년 6월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하여 운영 중에 있고, 본 위원회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개정안	집행부의견
협회의 위원장은 <u>행정1부시장</u> 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회의 위원장은 <u>헌혈관련 업무 부서의 국장</u> 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u>과장</u> 으로 한다.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u>팀장</u> 으로 한다.

- 현재 집행부서의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은 2017년 구성되어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

려움.

- 현재 구성된 협의회의 주요한 업무가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홍보 역할이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추천에 의한 서울시장의 표창이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공적심의회는 시민건강국장과 시민건강국 소관의 각 과장에 의해 이루어졌음. 또한 2019년 6월 14일이 헌혈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표창조차 수여되지 않은 상황임.

구분	소속	직위
위원장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장
위원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위원	수도방위사령부	인사근무과장
위원	뉴시스	사회정책부장
위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
위원	대학적십자사 서부혈액원	혈액원장
위원	한마음혈액원	혈액원장
위원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	혈액원장

- 이에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및 설득방안의 마련을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이며,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련 예산의 편성 등에 있어 미온적인 상황임.

다. 협의회위원회의 구성 관련

- 개정안 제8조는 협의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상기에 서술된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제외하고 협의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회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개정안 제8조

<생략>

- ④ 협의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 ⑤ 위원장은 협의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 법 제4조의4³⁾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3)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3 종합의견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특별히 지정되지 않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추가하는 바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일부 조문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